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최우수논문상 규정

2014. 10. 13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법무 최우수논문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상은 “국제법무 최우수논문상”(이하 “최우수논문상”이라 한다.)이라 한다.

제3조(시상분야) 최우수논문상 시상은 전 분야 중 1편으로 한다.

제4조(심사대상논문) 최우수논문상 시상연도의 국제법무에 게재된 논문 중 당해논문 심사위원 전부로부터 “수정 후 게재”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.

제5조(심사선정위원회) ① 최우수논문 심사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고, 최우수논문상 수상논문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(위임장 포함)으로 심사한다.

③ 위원회가 수상적격 논문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최우수논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6조(부상) 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7조(시상) 최우수논문상의 시상은 연 2회로 한다.

제8조(개정) 이 규정은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